

여행조건서 안내(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에게 문의 해 주십시오.)

이 여행은 세이부 철도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기획·모집하는 국내 여행이며, 이 여행에 참가하시는 고객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하 “여행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게 됩니다.

1.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1. 이 여행은 세이부 철도 주식회사가 기획·모집하고 실시하는 국내 여행이며, 이 여행에 참가하시는 고객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조건은 각 코스별로 기재되어 있는 조건 외에 여행 신청 시 건네 드리는 여행조건서, 출발 전에 건네드리는 최종 여행 일정표 및 당사 여행업 약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에 따릅니다.

2. 신청 조건

-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계약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또는 기타 참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2. 응모 여행자 수가 모집 예정 수에 달했을 때.
 3. 고객이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 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때.
 5. 통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고객이 보유한 카드가 무효이거나 고객이 여행 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의 카드 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때.
- 원칙적으로 20세 미만인 분이 단독으로 참가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초등학생 이하)만 참가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신체장애인,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말씀하셔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으로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간병인의 동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여행 신청 방법 및 계약의 성립

1. 당사 소정의 여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신 후 다음에 정하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여행 대금 또는 취소료 혹은 위약료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2. 당사는 전화, 우편, 팩스 또는 기타 통신 수단에 따른 여행계약의 예약을 받습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당사가 예약 승낙을 한다고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에 해당하는 날까지 신청서와 계약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3. 계약금(1인)

여행 대금	10,000 엔 미만	10,000 엔 이상 30,000 엔 미만	30,000 엔 이상
계약금	3,000 엔	5,000 엔	10,000 엔

4.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상기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로 고객의 서명 없이 여행 대금의 지불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 우편, 팩스 또는 기타 통신 수단에 따라 여행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당사가 제휴사와 무서명 취급 특약을 포함한 가맹점 계약이 없는 등 또는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통신계약 신청 시 고객은 신청하려는 “여행의 명칭”, “출발일” 등과 함께 “카드회사 이름”, “회원 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2. 통신계약에 따른 여행계약은 당사가 신청을 승낙하는 통지를 발행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전화 신청의 경우는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고, e-mail 등의 전자 승낙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그 통지가 고객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3. 통신계약에서의 “카드 이용일”은 고객 및 당사가 여행계약에 근거한 여행 대금 등의 지불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이며, 전자의 경우는 계약 성립일, 후자의 경우는 계약 해제 신청일이 됩니다.
6. 당사 여행에 참가하실 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고객은 예약 신청 때 말씀해 주십시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단, 당사가 고객을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7. 당사는 여행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 대금 및 기타 여행 조건과 당사의 책임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건네드립니다. 또한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계약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제공했을 때는 고객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춰진 파일에 기재 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파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는 당사의 통신기기에 기록하여 고객이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4. 여행 대금의 지불

여행 대금(계약금을 뺀 잔액)은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4 일 전에 해당하는 날보다 이전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4 일 전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는 여행 개시일 전의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특히 부연 설명이 없는 경우 만 12세 이상인 분은 어른 요금, 만 3세 이상 12세 미만인 분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5. 여행이 중지되는 경우

참가하실 고객이 팸플릿에 미리 명시한 최소 실시 인원에 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여행 실시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3 일 전에 해당하는 날(당일치기 여행은 3 일 전)보다 이전에 연락하여 보관하고 있는 여행 대금 전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6. 여행 대금에 포함되는 것

여행 일정에 명시한 운송기관의 운임·요금, 소비세 등 제반 세금 및 특히 명시한 기타 제반 비용. 또한 이들 제반 비용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일부 사용되지 않더라도 환불은 해 드리지 않습니다.

7. 여행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 숙박비 등 제반 비용 및 추가 음식비 등 개인적 성질의 제반 비용, 그에 따른 세금·서비스 요금. 규정을 초과한 만큼의 수하물 요금, 자유 행동 중의 제반 요금. 희망자만 참가하는 옵션 플랜(별도 요금)의 대금 등.

8. 여행계약 내용 및 여행 대금의 변경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 후에도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기관 또는 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운송기관의 지연이나 그 외 당사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실시를 위해 어쩔 수 없을 때는 고객에게 미리 신속하게 해당 사유와의 인과 관계를 설명한 후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또는 기타 여행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긴급하여 어쩔 수 없을 때는 변경 후에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하는 운송기관의 운임·요금과 관련하여 현저한 경제 정세의 변화 등으로 여행 대금이 통상적으로 연상되는 정도를 대폭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될 때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액되는 경우는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15일째가 되는 날보다 이전에 통지해 드립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운임·요금 감소액만큼 여행 대금을 감액합니다. 운송기관 또는 숙박시설 이용 인원에 따라 여행 대금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 여행계약 성립 후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해당 이용 인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여행 대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고객의 교체

고객은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 및 관계기관의 승낙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계약상의 지위를 물려받은 제삼자는 고객의 해당 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10. 고객에 의한 계약의 해제·환불

고객은 언제든지 아래와 같은 취소료를 지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의 제휴사 카드에 서명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모집형 기획여행 취소료

취소일		취소료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1 일째 이전(당일치기 여행은 11 일째)의 해제	무료
	20 일째(당일치기 여행은 10 일째)~8 일째의 해제	여행 대금의 20%
	7 일~2 일 전의 해제	여행 대금의 30%
여행 개시일 전날의 해제		여행 대금의 40%
여행 개시일 당일의 해제		여행 대금의 50%
여행 개시 후의 해제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여행 대금의 100%
이 표의 적요에 있는 “여행 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 규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후를 말합니다.		

2. 숙박 플랜 취소료

	무숙박	당일	전날	~3일 전	~5일 전	~7일 전	~20일 전
1~14명	100%	50%	20%		무료		
15~99명까지	100%	50%	20%			무료	
100명 이상	100%	50%	20%				10%

3. 고객의 사정으로 신청 코스나 출발일을 취소하고 새롭게 다른 코스나 출발일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 인원 수에서 일부 인원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여행 대금에 대해 1인당 상가 취소료의 대상이 됩니다. 1건에 대해 수속 수수료로 220엔을 받습니다.
4. 고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앞 항에 관계 없이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의해 여행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었을 때.
 2. 여행 대금이 증액되었을 때.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기관이나 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또는 기타 사유가 생겼을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클 때.
 4. 당사가 고객에게 여행계약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5. 당사에 의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6. 고객은 여행 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당사가 그 사실을 통지했을 때, 앞 항에 관계 없이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받을 수 없게 된 부분과 관련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단, 당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이미 지불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관련된 금액을 빼고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11. 계약 체결의 거부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또는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2. 응모 여행자 수가 모집 예정 수에 달했을 때.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 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통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이거나 여행자가 여행 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 카드 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때.
5.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될 때.
6. 여행자가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들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7. 여행자가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 혹은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혹은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들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8. 그 외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때.

12. 당사에 의한 여행계약의 해제

[여행 개시 전]

-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여 여행 개시 전에 여행의 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는 이미 받아 둔 여행 대금(혹은 계약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 고객이 당사에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또는 기타 참가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판명되었을 때.
 - 고객이 병에 걸리거나,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 또는 기타 이유로 해당 여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 고객이 계약 내용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참가 인원이 코스별 규정의 최소 실시 인원에 달하지 않았을 때.
 -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의 경우 필요한 강설량 등 여행 실시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명시한 것이 성취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클 때.
 -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기관이나 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또는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일정에 따른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클 때.
 -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로 되거나 여행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의 카드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앞 11 항의 ⑤~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지정 기일까지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해당 기일의 다음날에 고객이 여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당사에 대해 규정된 취소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당사는 앞 항에 제시한 사유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3 일째(당일치기에 대해서는 3 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이전에 여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여행 개시 후]

-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 개시 후라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병에 걸리거나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 또는 기타 사유로 계속 여행하기가 어려울 때.
 -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동승하는 안내원이나 기타 관계자의 지시를 고객이 따르지 않거나, 이러한 사람 또는 동행하는 다른 고객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하여 단체 여행의 규율을 어지럽혀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때.
 - 여행자가 앞 11 항의 ⑤~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기관이나 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중단, 관공서의 명령 또는 기타 당사가 관여하지 않은 이유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당사가 여행 개시 후에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당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 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앞 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 대금 중 고객이 아직도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 부분의 금액에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또는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빼고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13. 여행 대금의 환불

1. 고객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고, 그것이 여행 개시 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인 경우에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개시 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인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당사는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을 때 제휴사의 카드 규약에 따라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여행 개시 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인 경우에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개시 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인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당사는 고객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고객에게 해당 통지를 한 날을 카드 이용일로 합니다.
3. 앞의 두 항은 고객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14. 계약 해제 후의 귀로 알선

당사는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개시 후에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때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객이 여행의 출발지로 되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행 서비스 알선 업무를 맡습니다. 단,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15. 단체·그룹 계약

당사는 동일한 여행 일정으로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단체 또는 그룹)의 대표자가 신청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대표자는 그 단체나 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체나 그룹에 관련된 여행 업무 관련 거래는 해당 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실시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 명부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해 현재 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질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 또는 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16. 여정 관리

1. 당사는 고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합니다. 단, 당사가 고객과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여행 중에 여행 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 서비스 제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2. 앞 항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대체 서비스를 알선합니다. 이 때 여행 일정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의 여행 일정이 당초의 여행 일정 취지에 맞는 것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때

는 변경 후의 여행 서비스가 당초의 여행 서비스와 같은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2. 고객은 여행 개시 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단체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여행 중에 고객이 질병이나 상해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고, 고객은 그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17.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당사 또는 알선 대행자가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단,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해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기관이나 숙박시설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또는 기타 당사 또는 알선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2. 수하물에 관한 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당사에 대해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해 고객 1명당 15만 엔을 한도로 배상합니다(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8. 고객의 책임

당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고객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습니다.

19. 특별보상

1. 당사는 당사의 책임 유무와는 관계 없이 당사 여행업 약관 특별보상 규정에 따라 고객의 여행 계약 참가 중 그 생명·신체 또는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액수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불합니다.
2. 앞 항의 손해에 대해 당사가 책임을 질 때는 그 책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금액의 한도에 있어서 당사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3. 앞 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의 보상금 지불 의무는 당사가 앞 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축합니다(앞 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합니다).
4. 당사의 여행계약 참가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 대금을 수수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계약에 대해서는 주된 여행계약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20. 여정 보증

1. 당사는 아래 표에 제시하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기관이나 숙박시설 등의 좌석, 방 또는 기타 설비 부족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 이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는 여행 대금에 아래 표의 오른쪽 칸에 기재된 비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의 변경보상금을 여행 종료 후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지불합니다. 단, 다음에 제시하는 변경을 제외합니다.
 -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기관 또는 숙박시설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당초의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

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해당 해제된 부분과 관련된 변경.

2. 당사가 지불해야 할 변경보상금 금액은 고객 1인당 하나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여행 대금에 15%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지불해야 하는 변경보상금의 액수가 1,000엔 미만일 때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변경보상금 지불이 필요한 변경	1 건당 비율(%)	
	여행 개시 전	여행 개시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개시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레스토랑을 포함) 또는 관광시설 및 기타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낮은 요금의 등급으로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 요금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을 밑돌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여행 개시 지점인 공항 또는 여행 종료 지점인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시설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시설의 객실 종류, 설비, 경관 또는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8. 앞 각호에 제시한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2.5	5.0
주 1	“여행 개시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 개시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 개시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 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 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확정서면”을 “계약서면”으로 간주하고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 사이에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3	3. 또는 4.에서 제시한 변경에 관련된 운송기관이 숙박시설 이용을 동반하는 경우는 1박에 대해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4	4.에서 제시한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더 높은 레벨로의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5	4. 또는 6. 혹은 7.에서 제시한 변경이 1 승차/승선 등 또는 1 박 중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가 있어도 1 승차/승선 등 또는 1 박을 1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6	8.에서 제시한 변경에 대해서는 1.부터 7.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8.에 따릅니다.

21. 안내원의 업무에 대하여

안내원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쿠폰 제출 등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속은 고객 스스로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 모집 코스에 안내원이 동행하는 경우는 팸플릿에 명시합니다.

22. 최소 실시 인원

최소 실시 인원은 코스별로 다르므로 팸플릿에 명시합니다.

23.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1. 당사는 여행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해 고객과의 연락을 위해 이용하며, 그 외에 고객이 신청한 여행에서 운송기관이나 숙박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알선 및 서비스 수령을 위한 수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2. 당사에서는 ① 취급 상품, 서비스 등의 안내, ② 의견이나 설문조사 부탁, ③ 통계자료 작성 등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4. 기타

1. 출발 당일에 여행 회원권, 승차권류, 일정안내서를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2. 각 코스에는 정해진 집합·출발 시간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코스의 집합·출발 시간에는 조금 일찍 모여 주십시오. 만일, 집합·출발 시간에 늦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여행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4. 여행 조건의 기준일: 이 여행 조건은 2017년 3월 1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상해보험 가입 권장

안심하고 여행을 하기 위해 고객 본인께서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여행 기획·실시

사이타마현 지사 등록 여행업 제 2-1184 호
 세이부 철도 주식회사
 (우)359-8520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구스노키다이 1-11-1
 TEL (04)2926-3751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 정회원

국내여행업무 취급관리자 가와사키 노리오